

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14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- 상정일자 :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4년 9월 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」은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,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임.
- 보라매공원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함.

- 아동의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아동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놀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기 관 명 :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
- 위 치 :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
- 규 모 : 341.60m², 지상 1층
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: 회차별 아동 27명(안) / 종사자 5명
- 조성기간 : 2024.9.~2025.3.
- 소요예산(설치비) : 425백만원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」 운영 및 관리
 - 조직·인사 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
- 적절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등을 활용한 돌봄·놀이 복합시설로 운영
- 위탁기간 : 5년(2025.3. ~ 2030.3.) ※ 예정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- '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3. 7.26.)
- '25년 소요예산(안) : 450백만원(민간위탁금, 민간위탁사업비)
 - 인건비 : 217백만원 / 운영·사업비 : 125백만원 / 기자재비 : 108백만원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- 계절과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고, 경제적 부담이 없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있으며,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활

- 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 놀이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
-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 생태 환경과 어우러진 놀이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, 공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을 수행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
-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·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25년 초 보라매공원 내 개소 및 운영 예정인 ‘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’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한다) 제4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운영과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시설물 유지와 재산관리 등임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²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의2제1항⁴⁾에 따라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.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⁵⁾ 및 제6조⁶⁾ 등에서는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로서 ‘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2항⁷⁾에서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8.~9. (생략)

7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3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‘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따라서 향후 집행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」은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,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임
- 나. 보라매공원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함
- 다. 아동의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아동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놀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- 기관명 :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
 - 위치 :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
 - 규모 : 341.60㎡, 지상 1층
 -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정원 : 회차별 아동 27명(안) / 종사자 5명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「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」 운영 및 관리
 - 조직·인사 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 - 적절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등을 활용한 돌봄·놀이 복합시설로 운영
- 위탁기간 : 5년(2025.3. ~ 2030.3.) ※ 예정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- '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3.7.26.)
- '25년 소요예산(안) : 450백만원(민간위탁금, 민간위탁사업비)
 - 인건비 : 217백만원 / 운영·사업비 : 125백만원 / 기자재비 : 108백만원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- 계절과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고, 경제적 부담이 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있으며,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 놀이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

-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 생태 환경과 어우러진 놀이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, 공간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을 수행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
- 서울형 키즈카페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·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]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]

-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강 한 (☎2133-4808)